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

-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민회수**

〈차 례〉

1. 머리말
2.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조·영조약 관련 한문 자료 소개
3. 조·영조약의 초고본 내용: 최종본과의 비교
4. 조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초안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한문본 문서 중 1883년에 체결된 제2차 조·영조약 관련 자료(FO 1080/190~191)는 주로 외교 사절 간에 교환한 서신과 조약 및 부속 협약에 대한 한문본 초안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초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조선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 삭제, 비개항장 항구 무역 적발시 상인의 감금 규정 누락, 그리고 최혜국대우 조관 중 쌍무적 내용의 편무적으로의 수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조선에 불리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조계 밖 토지 임차시 세금 액수 규정 내용의 조선 규정 준용으로의 변경, 토지 임차시 매매 가격의 관원 결정 내용과 더불어 세금 징수액 관련 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그리고 영국인의 여행시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지방관 간섭 금지 내용의 '편의 도모'로의 변경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영조약에서 집약되어 형성된 '동아시아 조약 시스템'을 지키

*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 심사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 오류들을 수정하고 논문의 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려는 영국 측 협상 대표 파크스(H.S.Parkes; 巴夏禮)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격식이 격하된 흔적을 통해 영국 측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 설정하는 비종의 상대적인 하락 또한 유추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비개항장에서 의 통상 규정 등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주제어] 국립기록보존소, 영국, 파크스(H.S.Parkes; 巴夏禮), 조·영조약, 한문본, 초안, 최혜국대우, 영사재판권

1. 머리말

한국사에서 시대구분으로서의 ‘근대’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도입을 기점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외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근대적 국제질서의 기준은 바로 ‘萬國公法’이다. 모든 국가가 형식상 대등한 관계를 매개로 구성되는¹⁾ 이 근대적 국제질서가 매개로 하는 것이 바로 ‘條約(treaty)’으로, 이 ‘조약’, 구체적으로는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 체결을 통해 조선왕조는 전통적인 事大秩序에서 근대적인 만국공법질서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시점은 아직 전통적인 유교 문명에 입각한 사대질서와 새로운 기독교 문명에 입각한 만국공법 질서가 충돌하는 단계로서,²⁾ 완전한 만국공법체제로의 진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조선은 이 조약의 체결을 ‘舊好의 重修’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새로운 체계로의 진입은 6년이 지난 1882년에 미국·영국·독일과 동시에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이 시작하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개국과 체결한 조약 중에서도 특히 이후 타국과의 조약 체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영국과의 조약이었다. 한 번 조약을 체결했다가 관세

1) 다만 만국공법체제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1:1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바다, 「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 『國際法學會論叢』 62(2), 2017 참조.

2) 이러한 문명권 충돌의 시각에서 이 시기 대외관계를 연구한 경우는 김용구가 대표적이다(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참조).

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비준이 거부된 뒤 재협상을 통해 1883년에 체결된 朝·英修好通商條約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으로서 이후 체결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타 서구 국가들과의 조약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³⁾ 조·영 조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 조약 체결의 배경과 더불어 관세율 등 제반 협상의 쟁점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실이 규명된 바 있다.⁴⁾

그런데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 큰 쟁점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약문의 字句에 대한 협상 및 수정일 것이다. 한번 체결되면 문장 내의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까지가 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약문의 작성 과정은 치열한 협상을 통한 세세한 수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오늘날 FTA 협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조항 내의 문장 하나하나를 정하는데 엄청난 논쟁과 토론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약 문구의 수정 및 그를 위한 협상 과정 등에 대해서는 1876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와 관련해서 비교적 많은 자료가 현전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일본과의 왕복 공문은 물론 협상의 세세한 일지가 망라된 1880년까지의 공식 기록인 『倭使日記』(奎貴16034)와 더불어 협상 당시 接見大官의 직함으로 참여한 申櫛의 개인 기록인 『沁行日記』 등 많은 자료들을 통해 조약문 수정을 위한 협상의 생생한 상황을 알 수 있다.⁵⁾

그런데 조·일수호조규를 제외하면 이후에 조선이 체결한 서구 열강들과의 조약 중에서 이렇게 자구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3)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와 체결한 조약은 조·영조약의 복사판이라고 할 만큼 거의 내용이 동일하며(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246쪽), 그 이전에 조약을 체결한 미국 역시 최혜국조관에 따라 제2차 조·영조약을 균점하였다. 따라서 결국 제2차 조·영조약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조·영수호통상조약과 관련된 근래의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철구, 「19C 후반 영국의 對韓政策: 1883년 한영 조약체결을 전후하여」, 『國史館論叢』 44, 1993; 김현수, 「파크스(Sir Harry Parkes) 관련 자료들을 통해 본 한영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 『영국연구』 11, 2004; 한승훈, 「朝英條約(1883.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韓國史研究』 135, 2006;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의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한국 근현대사연구』 52, 2010;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1874~1895)」,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오정우, 「韓末 朝鮮의 對英修交 考察」, 『전북사학』 40, 2012 등.

5) 『심행일기』의 경우 김종학의 번역본이 참고된다(김종학,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2010).

경우는 거의 없다. 전술하다시피 특히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약이 조·영조약이라고 한다면, 이 조약의 조약문 작성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조선이 체결한 불평등조약 전체의 상을 알려줄 수도 있는 귀중한 존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영조약과 관련하여 알려진 자료 중 관세율이나 영사재판권 등 굵직한 테마와 관련된 내용은 많아도, 상대적으로 그보다 내용상의 비중은 약하더라도 세세한 자구 표현의 수정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약칭 TNA)⁶⁾에 소장된 조·영조약의 한문본 초안 자료에 주목하게 되었다. 비록 쌍방간의 협상 과정이 아니라 한쪽에서 작성한 내용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조약의 보다 세세한 자구 하나하나에 대한 수정 과정을 통해 기존의 외교문서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조약 체결 이전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한문본 자료 전체에 대해 크게 서신류와 초안류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뒤, 조·영조약 본조약의 작성 과정에서 생성된 초안 몇 종을 완성된 조약 최종본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조약문 초안의 작성 과정 및 그에 담긴 합의 등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2.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조·영조약 관련 한문 자료 소개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는 1883년 조·영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아무래도 그중 영문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FO 문서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들이 이 주제와 관련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FO 405/33, FO 405/34 두 사료철의 경우 1883년 11월 26일에 체결된 제2

6) 舊 Public Record Office가 개명한 것이다(홈페이지 URL;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

차 조·영조약 체결 과정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⁷⁾ 특히 조약 협상의 영국 측 책임자였던 駐淸英國公使 파크스(H.S.Parkes; 巴夏禮)가 1883년 6월 22일 본국에 제출한 조약 초안이 조선과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된 내용 및 결과적으로 제2차 조·영조약으로 귀결된 전모를 보고한 보고서 모음인 FO 405/34에는 조선과 영국의 조약 교섭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런데 이와는 다른 이채로운 자료가 있다. 바로 한문으로 된 자료이다.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조·영조약 관련 한문사료는 크게 보아 FO 1080 사료군에 속해 있으며,⁹⁾ 그 아래에 다음의 사료철들이 있다.¹⁰⁾

- ① FO 1080/186 사료철(한·영조약) : 한국 국왕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낸 서한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 letter from King of Korea to Queen Victoria)
- ② FO 1080/188 사료철(한·영조약문)
(Text of Anglo-Korean treaty)
- ③ FO 1080/189 사료철(한·영조약)
(Anglo-Korean treaty)
- ④ FO 1080/190 사료철(한국과의 조약, 관세와 무역 협정) : 서신과 초안들

7) 특히 FO 405/33의 No.133에는 조약 체결 협상의 영국측 당사자인 파크스가 1883년 6월 22일에 영국 외무부에 제출한 제2차 조·영조약 초안이 수록되어 있다(최덕수 외, 앞의 책, 215~230쪽 참조).

8) FO 405 사료철의 상세한 서지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한승훈, 앞의 논문, 2015, 270~273쪽 참조.

9) FO 1080 사료군은 '외교부 : 중국 비서실, 대사관과 공사관, 베이징, 중국 : 기타(Foreign Office : Chinese Secretary's Office, Embassy and Legation, Peking, China : Miscellanea)'라는 제하에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관의 중국 비서실에서 작성 또는 보관된 각종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서신 초안, 조약 초안 및 인쇄된 조약문, 규정 및 선언의 사본들, 그리고 중국어 학습 학생들을 위한 대술 카드 및 교과서, 시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https://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details/r/C8379>).

10) 이 자료는 아직까지 사료집이나 원문 DB 등의 형태로 제작된 바 없으며, 따라서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발굴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이 사료의 이미지들은 약 10여 년 전에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용구)가 영국의 문서보관소에 가서 촬영해 온 것이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이셨던 김용구 선생님과 당시 이미지를 촬영하여 제공해 주셨던 영국문서팀 연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Treaty with Korea, tariff and trade regulations : correspondence and drafts)

⑤ FO 1080/191 사료철(한국과의 조약) : 서신과 초안들

(Treaty with Korea : correspondence and drafts)

주지하다시피 조·영조약은 두 번 체결되었다. 윌리스(G.O.J.Willes; 韋力士) 제독이 협상을 주도하여 1882년에 제1차 조약이 체결된 이후 관세율 등의 문제로 영국의 비준이 거부되었고, 이후 재협상을 거쳐 이듬해인 1883년에 제2차 조약이 체결되었다. 위의 사료철 중 ①, ②의 경우 1882년 제1차 조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②는 체결된 조약문 원문에 해당된다. 그리고 ①의 경우 조선이 청의 속국이나 내치와 외교는 自主로 한다는 내용의 屬邦照會文으로, 조선이 체결한 조약국마다 같은 내용으로 보낸 문서 중 영국에게 보낸 것이다. 따라서 별다른 사료적 가치는 없다고 하겠다.

③~⑤는 제2차 조약 관련 문서로서, 일단 ③은 제2차 조·영조약 원문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룰 자료는 바로 그 다음인 ④와 ⑤이다. 이들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서신(correspondence)’과 ‘초안(draft)’이다. 서신은 조약체결과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당시 조선측 대표였던 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과 영국측 대표였던 파크스 간에 왕복했던 문서 중 한문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의 경우 조약의 한문본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군으로서, 다수의 수정 표기가 곁들여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자료의 생성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¹¹⁾

11) 일단 본 자료가 영국 TNA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로, 조약 협상시 영국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며, 그럴 경우 초안 작성의 주체로 생각해볼 수 있는 후보군으로 당시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표였던 파크스와 일본 나가사키 주재 영사인 에스턴(W.G. Aston; 阿須頓), 그리고 파크스 밑에서 서기관을 역임하고 있던 힐리어(W.Hillier) 등이 그들이다. 이들 중 상대적으로 에스턴의 경우는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일본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 정통하였으며, 이후 조선에 와서는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였으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근무 경력이나 저술 등이 딱히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김승우, 『19세기 말 서구인 윌리엄 G. 에스턴의 한국문학 인식』, 『동양고전연구』 61, 2015; 석주연, 『구한말 영국인 외교관 에스턴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 - 한국어 관련 논문과 한국어 학습 일지를 중심으로』,

먼저 초안류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FO 1080/190/1 : 조·영조약 부속 通商章程에 대한 초안으로, 대부분 오·탈자 교정이거나 표현상 미비한 곳에 대한 첨가 혹은 불필요한 표현 삭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장정의 기본적인 취지가 변한 곳은 별로 없으며, 단 전체의 체제가 다소 변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원래 장정은 총 3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¹²⁾ 원안에는 제4관이 ‘通商章程雜款’이라는 타이틀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영국 선박이 조선 항구에 들어오면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박해야 한다던가, 화약 등을 실은 배는 붉은색, 전염병 환자가 있는 배는 황색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제3관의 마지막 조항¹³⁾은 원안에서는 별도의 관으로 독립되어 제5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역시 조정 과정에서 제3관의 제5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 ② FO 1080/190/2 : 앞의 ①과는 또 다른 버전의 통상장정 교정본으로 보이며, 역시 대체로 오·탈자 교정이나 표현상 미비한 곳에 대한 첨가 혹은 불필요한 표현 삭제 등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다만 눈여겨볼 부분이라면, 제3관의 제목인 ‘防守偷漏遠越(세금의 탈루 및 기피 방지 규정)’이 원안에서는 ‘保護征收稅課(부과 세금 징수의 보호 규정)’이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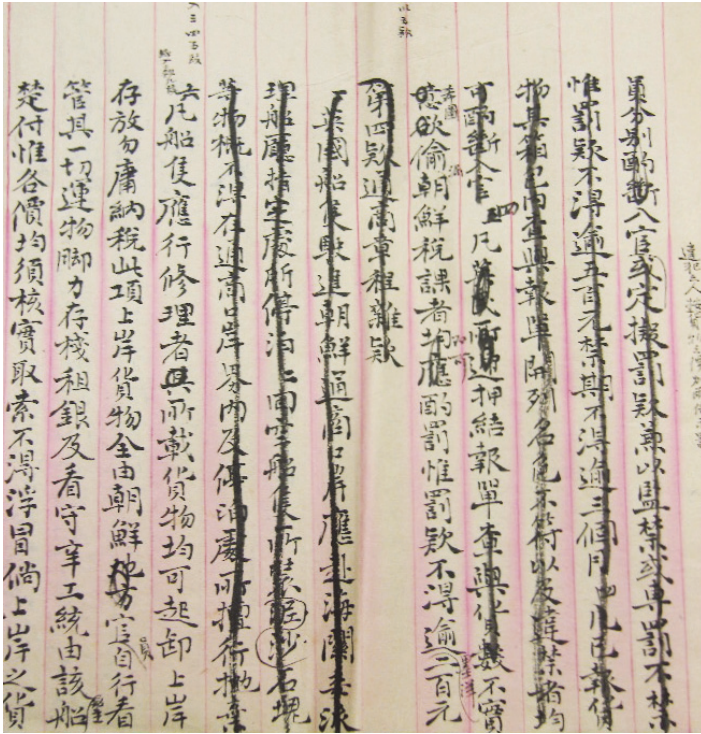
『국어교육연구』 39, 2017 등 참조). 파크스의 경우 어린 나이인 10대 초반부터 마카오로 가서 (1842년)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으며, 이후 20여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며 외교관으로 활동하였고,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일본, 조선 등에서 지낸 전력을 생각해볼 때(김현수, 『영국 직업 외교관, 씨 해리 파크스(Sir Harry Parkes)의 동아시아 외교 활동, 1842~1885』, 『영국연구』 9, 2003 참조) 한문본 초안 작성자의 후보로 상정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18세의 나이로 주청영국공사관의 견습통역관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힐리어 역시 작성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파크스의 보조 수준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口)

제2관 : 화물을 신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제3관 : 세금의 탈루 및 기피 방지 규정(防守偷漏遠越).

13) 장정 내용의 위반시 벌금 부과 규정과 규정 내에 열거한 문건들의 영문 작성 원칙이 명기되었다.



〈그림 1〉 조·영조약 부속 통상장정 초안(FO 1080/190/2)

- ③ FO 1080/190/3 : 조·영조약 본문에 대한 초안으로, 최종 조인 직전 마무리 교정본으로 보인다. 몇 부분의 오타자 및 미비한 부분 교정 이외에는 최종본과 거의 비슷하다.
- ④ FO 1080/190/4 : 조·영조약 본문의 초안으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 ⑤ FO 1080/190/5 : 이 자료는 두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최종 조인된 것과 같은 조·영조약 본문이 있으며, 다음으로 1883년 9월 30일에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인천항 조계 관련 조약인 〈朝鮮國仁川口租界條約〉의 교정본 또한 삽입되어 있다.¹⁴⁾

14)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1884년에 일본, 미국, 청국, 영국과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을 체결하였는데, 그를 위한 협상 당시 파크스의 지시에 따라 에스턴이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한승훈, 앞의 논문).

- ⑥ FO 1080/190/6~7 : 부속 통상장정 초안의 또 다른 버전으로, 제4관 ‘通商章程雜款’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으로 보아, 앞의 것들 (①~②)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⑦ FO 1080/190/8/1~7 : 조·영조약 본문에 대한 초안으로 비교적 초창기의 버전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글씨가 초서에 비슷한 흘림으로 쓰여졌고, 여기저기 마치 낙서한 것과 같이 거칠게 고치고 첨가하고 삭제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며, 款의 수 및 각 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최종본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 ⑧ FO 1080/190/8/8~9, 14~20 : 조·영조약 稅則의 초안으로 각종 품목의 가감 및 수정이 가해진 교정본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눈에 띄나 관세율에 대한 규정(5%, 7.5%, 10%, 20%) 자체에는 손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관세율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⑨ FO 1080/190/8/10~13 : 부속 통상장정의 또 다른 초안으로, 앞서 지적한 제3관의 제목 변경이나, 제4관의 삭제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상당히 초창기의 버전으로 보여진다.
- ⑩ FO 1080/190/9 : 조·영조약 세칙 및 부속 장정의 초안으로, 역시 관세율 관련 규정(5%, 7.5%, 10%, 20%)의 수정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미 관세율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⑪ FO 1080/191/6 : 조·영조약 본문의 초안으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 ⑫ FO 1080/191/7 : 조·영조약 제5관 제1항의 교정본이다.
- ⑬ FO 1080/191/8 : 세칙 관련 문서로 추정되나, 심한 초서로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 ⑭ FO 1080/191/9 : 조·영조약 세칙과 관련하여 관세율의 원칙에 대한 문건으로, 8% 품목의 일부는 5%로, 일부는 10%로 하며, 관세율은

2010, 74쪽). 따라서 이 장정의 협상과 체결 과정에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국 인천구조계조약>에 당시 나가사키 영사직에 있던 에스턴이 관여했던 흔적이 아닐까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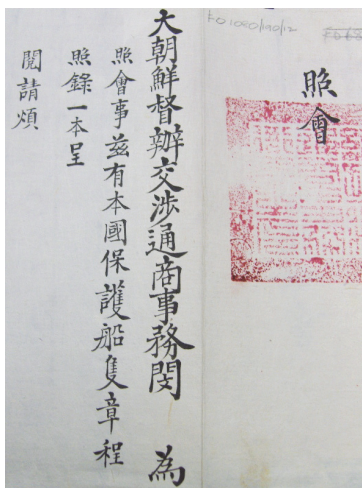
20%를 넘을 수 없고, 8%의 세율을 7.5%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협상 과정에서 파크스가 제시한 수정안의 지침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⁵⁾

- 15) FO 1080/191/10 : ‘惟朝鮮政府不悅之書籍’이라는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는 문서이다.
- 16) FO 1080/191/11 : 조·영조약 본문의 초안으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 17) FO 1080/191/12~13 : 조·영조약 부속 善後續條의 본문으로, 교정본이 아닌 완성본이다.
- 18) FO 1080/191/14 : 조·영조약 부속 선후속조 중 제1관(영사재판권 폐지 관련 조항)의 교정본으로, 원래 본 조약 제3조 마지막에 있다가 없어진 후 선후속조에 삽입된 조항이다. 약간의 교정 흔적이 있고, 내용의 기본 취지는 최종본과 같으나 문구가 다소 다른 점으로 볼 때 역시 교정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 19) FO 1080/191/15 : 조·영조약 본문에 대한 교정본으로 앞의 11)·16)과는 달리 총 13조의 최종본 체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 내용도 자구 수정 등에 국한된 점으로 볼 때, 최종 완성본에 임박한 단계의 교정본으로 추정된다. 붉은색 첨지를 사용해 교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타 교정본과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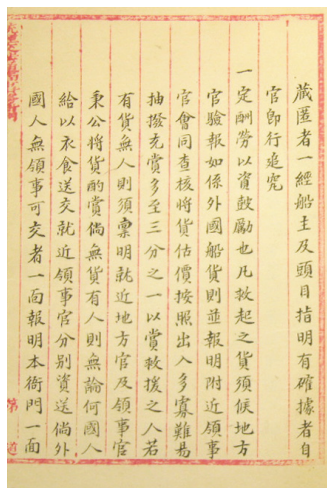
다음으로 서신류의 경우, 상당수가 『英案』(奎18051)에 수록된 문서들과 중복된다.¹⁶⁾ 다만 조선에서 영국 측에 보낸 문서들의 경우 이곳의 자료들은 당연히 문서 원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의 차원에 있어서는 謄錄에 해당되는 『영안』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겠다.

15) 세칙의 세율 결정 부분은 조선과 영국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조선 측은 1883년 7월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의 세율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였고, 영국 측은 파크스가 1883년 6월에 작성한 초안에 수록된 세율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조선은 영국 측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영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도록 합의하였다(한승훈, 앞의 논문, 2006, 241~244쪽).

16)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13(英案 1), 1967에 이 문서들이 활자화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림 2〉 조선 측에서 영국에 보낸 서한의 원본(FO 1080/190/12)



〈그림 3〉〈보호선척장정〉 원문 (FO 1080/190/11)

이 서신류의 자료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한다면 〈船隻保護章程〉(FO 1080/190/11)을 들 수 있다. 영국 측에서 통상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향후 자국의 배가 조선 근해에서 조난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선 측에 문의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조선에서 알려준 규정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영국 측에 보냈고 영국이 이를 받았다는 내용은 『영안』에 있으나 그 규정의 내용 자체는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¹⁷⁾ 영국 측 문서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¹⁸⁾

17) 위의 책, 11~12쪽, #22~23.

18)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항은 타이틀 + 부연 설명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제1항: 定地段以專責成也. 각 지방관이 관할 구역의 경계를 정하여, 외국 선박 구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내용이다.
- ② 제2항: 明賞罰以免推諉也. 외국 선박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고, 조난된 외국 선박을 보고도 무시하는 경우는 처벌을 행하여, 조난 선박 구조의 떠넘기기·기피 현상을 방지하라는 내용이다.
- ③ 제3항: 定章程以免混亂也. 조난된 외국 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여러 경우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혼란을 방지하라는 내용으로, 이를테면 조난된 배라고 하더라도 해당 船主가 타인이 배에 오르기를 원치 않을 경우는 구조자가 배에 타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④ 제4항: 定酬勞以資鼓勵也. 조난된 외국 선박의 구조에 대한 포상에 있어 경우별로 상금 액수 등을 분명히 규정하라는 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신류 관련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한문 문서 자료군의 실태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한문본 문서 중 서신류

문서번호	발신자	수신자	발신(수신)일 - 양력	발신(수신)일 - 음력	주요 내용
FO 1080/190/10	高宗	Queen Victoria		1883년 10월	全權大臣 민영복 파견 詔勅; 민영복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영국과의 조약 체결 임무를 위임한다는 내용
FO 1080/190/11					FO 1080/190/12의 부속문서로서, 〈보호선척장정〉의 내용(장정 본문).
FO 1080/190/12	閔泳穆	H.S. Parkes	1883. 11. 26		〈보호선척장정〉을 보낸다는 내용의 조 회문
FO 1080/190/13	閔泳穆	H.S. Parkes	1883. 11. 24		고종이 보낸 속방조회에 대한 빅토리아 여왕의 회답 국서를 이번 타결된 조약의 비준서 교환시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조 회문
FO 1080/190/14	閔泳穆	H.S. Parkes	1883. 11. 24		이번 협상에서 정해진 각 개항장의 세척 이 추후 예정될 수 있는 변경 지역의 육 로통상 세척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이의 수정을 원한다는 내용의 조 회문으로, 러 시아를 염두에 둔 듯한 내용으로 보임.
FO 1080/191/2	閔泳穆	H.S. Parkes	1883. 11. 17		조건부 영사재판권 폐지 조항은 이미 다 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도 들어있는 만큼 포기할 수 없고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조약이 무효화되면 양국 모두에게 예상 한 일일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양해 해 달라는 내용 ¹⁹⁾
FO 1080/191/4①	H.S. Parkes	閔泳穆	1883. 11. 17		앞의 FO 1080/191/2에 대한 답신으로, 해당 조항은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 등과 맺은 조약은 물론 초고에도 없는데 왜 비단 미국·영국·독일 3국에만 그 조항 을 고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의 조 회문
FO 1080/191/4②				1883. 11. 24	조약의 제5관 한문 번역본에 나오는 ‘運 자를 ‘載’자로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파 크스가 이것은 단지 글자의 변화일 뿐 내용의 본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언급하 는 내용

⑤ 제5항: 廣曉諭以昭勸戒也. 조난된 외국 선박의 구조에 대한 상벌 실시 여부를 백성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널리 알려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들의 구조 활동을 독려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상기 장정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청에서 1876년에 반포한 것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FO 1080/191/4③	H.S. Parkes	閔泳穆	1883. 11. 27		앞의 FO 1080/190/13에 대한 답신으로, 속방조회의 내용 지구를 상세히 검토한 뒤 영국 정부를 경유하여 여왕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조회문
FO 1080/191/4④	H.S. Parkes	閔泳穆	1883. 11. 27		앞의 FO 1080/190/14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번역하여 영국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답신 조회
FO 1080/191/4⑤	H.S. Parkes	閔泳穆	1883. 11. 27		앞의 FO 1080/190/12에 대한 답신으로, <보호선척장정>을 잘 받아 읽어보았다는 내용의 조회문
FO 1080/191/5	閔泳穆	H.S. Parkes	1883. 10. 25		파크스가 조·영조약의 재협상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받고 조선에 들어와 독일측 전권 자페(Ed. Zappe)와 회동한 뒤 10일 간의 일정으로 협상에 입할 예정이니, 집대나 숙소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준비 및 조선측 전권의 지정 파견을 요청한 조회에 대하여, 민영목이 자신이 전권으로 임명되었고, 파크스보다 먼저 조선에 도착한 에스턴과 이미 제반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하였으며, 파크스 일행을 인천에서 서울로 영접하기 위해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協辦 金晚植과 主事 徐相雨를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회답 조회문

3. 조·영조약의 초고본 내용 : 최종본과의 비교

1)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조항

이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자료 중에서 조약의 한문본 초안의 내용을 조약 최종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약의 초안 및 수정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는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이다.

- ① FO 1080/190/4 : 비교적 초기의 판본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조약 완성 최종본과 상당한 내용 차이가 있는데도 줄을 그어서 수정한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글자체 또한 본 조약의 초안 중에서 가장 정서하여 기룩한 느낌이다.

19) 조건부 영사재판권 폐지 규정을 파크스가 삭제하고자 하자 민영목은 협상 자체의 파기를 논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조회문은 그가 그러한 태도를 보인 직후에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 ② FO 1080/191/6 : 앞의 ①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줄을 긋고 수정한 대본으로, 수정 결과가 거의 대부분 조약 최종안과 일치한다. 따라서 실제 체결 조약문 확정과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수정으로 판단된다.
- ③ FO 1080/191/11 : 앞의 ①보다 이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서 밑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①에 정서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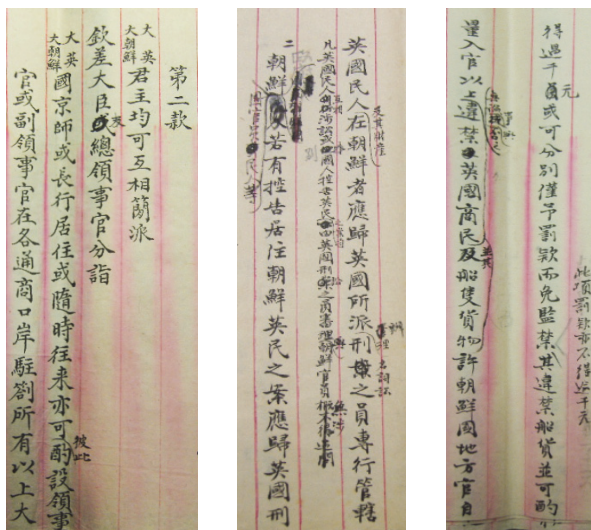
전술하였다시피 파크스는 1883년 6월 22일에 영국 외무부에 제2차 조·영조약의 영문본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점은 1882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규정된 청 측의 권리에 대한 균점을 요구하면서 벌인 조선 측과의 협상이 실패한 직후이기에, 파크스로서는 영국 외무부를 설득해서 제1차 조·영조약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신조약을 만들어서 승인받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다.²⁰⁾ 따라서 우선 영문본 초안을 먼저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한문본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측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①~③ 모두 1883년 6월 22일 이후를 작성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①과 ③은 6월 22일과 멀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③이 ①보다 약간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는 달리 ②는 이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 본 조약체결 시점에 근접하여 작성되었는데, 초안의 내용 중에서 그 시점을 대략 기능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나타난다.²¹⁾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②의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하되, 필요에 따라서 ①과 ③ 또한 참조할 것이며,²²⁾ 아울러 경우에 따라 영문본 초안과의 비교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20) 한승훈, 앞의 논문, 2006, 233쪽.

21)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각 조문별 초안의 내용에서 언급할 것이다.

22) 앞 장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외에도 FO 1080/191/8/1~7 또한 조약문의 수정본으로 보이는데, 글자체도 식별이 어려울뿐더러 제반 표기가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또한 개략적인 수정 내용도 앞의 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대동소이해 보이므로, 일단 이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FO 1080/190/4

FO 1080/191/6

FO 1080/191/11

〈그림 4〉 영국 측 작성 본조약 한문본의 초안들

이 자료들에 보이는 조약 내용의 수정은 개별 한자나 어구의 수정에서부터 문장이나 단락 수준의 삽입, 삭제, 수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중에서 어느 정도 본질적인 수준의 의미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를테면 ‘審辦’의 ‘辦’을 ‘斷’으로 고쳐 ‘審斷’으로, 혹은 ‘刑案’을 ‘刑訟’으로 고치는 등과 같은 사례들의 경우 단순한 표현상의 수정일 뿐이므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²³⁾ 이렇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 중에서 전면적인 개작이나 삭제 등 큰 폭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부분적인 내용의 첨가·삭제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조약 최종안과 초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3) 더불어 부연하자면 조관의 번호 또한 각 초안별로 상당히 변화가 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타결안을 기준으로 언급할 것이다.

최종안 : 【대조선국·대영국】 군주는 모두 서로 使臣을 선발하여 파견하며
【대조선국·대영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혹 수시로 왕래하게 하
며, 피차 의논하여 總領事官, 領事官 혹은 副領事官을 설치하고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
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는 다른 나라가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
받아야 한다.²⁴⁾

초안 : 【대조선국·대영국】 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하여 파견하며 【대
조선국·대영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혹은 장기간 거주하거나** 또는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피차 의논하여 총영사관,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설치하고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대신 등이 양국의
대군주를 알현하거나** 총영사관, 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
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는 다른 나라가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
는 최고 예우 및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²⁵⁾

상기 인용문에서 굵은 글씨로 밑줄 처리한 부분이 최종안에 없는 초안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원래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주재 사절이나 특별
파견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장기 파견 형태가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며²⁶⁾, 더불어 영국 측이 애초에는 사절의 국왕 알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외

24)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舊韓末條約彙纂』中, 東亞出版社 工務部, 1964, 322~323쪽, “... 第二款
一 【大朝鮮 大英】君主 均互相簡派使臣 駐節【大朝鮮 大英】國京師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
領事官領事官或副領事官 在各通商口岸處所駐節 所有以上使臣總領事官等 與彼此駐節之國官員 會
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 특수괄호(【 】,
표기한 부분은 원래 위아래 첨가 형태로 두 나라가 병기되어 있는 부분인데, 표현의 편의상 이하
이와 같이 표기한다.

25) FO 1080/191/6, “... 第二款 一 【大朝鮮 大英】君主 均互相簡派使臣 駐節【大朝鮮 大英】國京
師 **或長行居住**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領事官領事官或副領事官 在各通商口岸處所駐節 所有以
上**大臣等親見兩國大君主** 及總領事官領事官等 與彼此駐節之國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
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 참고로 FO 1080/190/4 및 FO 1080/191/11
에는 대군주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 다만 ‘장기간 거주한다’는 내용이 원래 주재나 임시 파견과 다른 별도의 형태로 고려된 것이 아니
라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로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교상 격식 차원에서 이를 조약문에 반영하려 했다는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영문본 초안을 보면 이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²⁷⁾ 여기서 한문본 초안이 기본적으로는 영문본 초안의 번역 개념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구애받지만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내용의 삽입 또한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다.

그다음 3항의 경우 양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최종안: 양국 총영사 등은 주재국의 勅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은 무역을 겸하여 행할 수 없다.²⁸⁾

초안: 양국 총영사 등은 주재국의 칙준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만약 임시로 파견되어 총원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또한 양국 秉政大臣의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은 **반드시 정식 관원이어야 하고** 무역을 겸하여 행할 수 없다.²⁹⁾

최종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주재 사절의 아그레망(신임장) 수령과 더불어 상행위 중사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초안에는 여기에 파견되는 사절의 성격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총영사 등 정규 직원은 반드시 정식 관원일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임시로 파견될 경우의 아그레망은 秉政(執政) 대신의 임시 허가를 받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문본 초안의 경우 임시 파견에 대해서는 ‘in the case of temporary appointments’라는 단서로 명기해 놓았으나 ‘집정 대신의 허가’ 부분은 누락되어 있으며, 정식 관원 관련 내용은 ‘They shall be bonafide officials’라는

27) 최덕수 외, 앞의 책, 217쪽. ARTICLE II의 1항이 해당 조항이다.

28)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앞의 책, 323쪽, “...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節之國勅準 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 ...”.

29) FO 1080/190/4 · 1080/191/6 · 1080/191/11, “...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節之國勅準 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設有暫行派充者 亦可由兩國秉政大臣權行首肯** 其所派總領事等官 **必須真正官員** 不得兼行貿易 ...”.

표현으로 반영되어 있음이 발견된다.³⁰⁾

다음으로 제4관 제4항은 조계 밖의 토지에 대한 영국인들의 입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최종안과 초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최종안: 만약 영국 사람이 토지를 영구히 또는 잠시 조차하거나 가옥을 세내거나 집을 지으려 할 경우 조계 밖이라고 해도 허가하며, 조계지에서 10리(조선의 里數)를 넘지 못한다. 이 지역에서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각 사안에 조선국이 자체 제정한 지방 세금 부과 장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³¹⁾

초안: 영국 사람이 조계 밖의 가옥이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조차하려 할 경우 허가하며, 조계지에서 10리(조선의 里數)를 넘지 못한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의 연간 세금은 매 1,000m² 당 멕시코 은화 () 를 납부하여 일체 부과되는 세금을 충당한다.**³²⁾

이 항목의 초안을 보면 최종안에 조선의 법률에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는 입차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규정에 대해서, 비록 액수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한때 이미 조약 체결시에 구체적인 세금 액수까지 못박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영사재판권만으로도 이미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컸으나, 이는 당시 불평등조약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계 밖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 입차 세

30) 최덕수 외, 앞의 책, 217쪽. 'bonafide'의 경우 본문에는 'bondfide'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문서집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近代韓國外交文書 5: 조영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2012, 606쪽) 실제로 'bondfide'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bondfide'라는 단어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아마도 원문서 자체에서 'bonafide(진정한, 진짜의)'의 오키로 기재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31)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앞의 책, 327쪽, “... 四 如英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朝鮮里)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 應行一律遵守朝鮮國自定地方稅課章程 ...”.

32) FO 1080/191/6, “... 四 如英人欲行租賃租界以外房屋地段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朝鮮里) **此項地段年稅 每方千米突 應納墨洋() 以抵一切稅課** ...”. 이 항목은 FO 1080/190/4와 FO 1080/191/11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 징수 액수까지 당사국이 조약체결국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조약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대단히 무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조약 초안 과정에서 한때 고려했으나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영문본 초안에서도 이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³³⁾

다음 제5관의 제5항은 개항장이 아닌 곳으로의 통상 규정과 관련된 항목으로, 초안과 최종안을 비교하면 이하와 같다.

최종안: … 조선 상인이 영국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 단,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³⁴⁾

초안: … 조선 상인이 영국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때에는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³⁵⁾

이 조항의 경우, 최종안의 내용이 1883년 7월에 타결된 조·일통상장정 제34관과 비슷하다. 비교를 위하여 해당 조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국 정부나 혹은 인민이 화물과 인원 등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운송하려고 할 때는 일본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단, 그 고용주가 인민일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허가증을 수령하고 고용해야 한다.³⁶⁾

따라서 이는 조선과 영국이 제2차 조·영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33) 최덕수 외, 앞의 책, 221쪽.

34)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앞의 책, 330쪽, “… 五 … 至朝鮮商民 如欲雇賃英國商船 裝載客貨 赴朝鮮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準 惟宜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

35) FO 1080/191/6, “… 五 … 朝鮮國商民 如欲雇賃英國商船 裝載客貨 赴朝鮮未通商口岸者 **除有重大事故** 應行一體酌準 …”. 이 내용 또한 FO 1080/191/6에서만 발견되며, 1883년 6월 22일자의 영문본 초안에서 역시 누락되어 있다.

36) 『高宗實錄』 권20, 20년 6월 22일, “… 朝鮮國政府或人民 欲將貨物人員等 運送不通商口 得其雇用 日本商船 但其雇主 若係人民 應領朝鮮政府准單雇用 …”.

당시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통상장정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며, 그 내용이 조약에 반영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여기서 FO 1080/191/6의 작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곧 조선과 영국의 협상 시점인 1883년 11월경으로 보인다. 즉 1883년 6월의 영문본 초안 및 비교적 초기의 초안인 FO 1080/190/4와 FO 1080/191/11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기 조관이 들어가 있다는 데에서, 실제 협상에 근접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 측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³⁷⁾

2) 삭제 또는 전면적 수정이 이루어진 조항

다음으로 보다 큰 폭의 변화, 곧 전면적인 삭제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정 혹은 첨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안의 제3관을 보면, 말미에 최종본에는 삭제된 조항이 존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향후 조선의 법률 체계가 영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 영사재판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이 조항은 1882년에 체결된 제1차 조약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었으나³⁸⁾ 제2차 조약 최종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이 조항의 유지를 조선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원함에 따라 善後續條의 제1항에 삽입되었으나,³⁹⁾ 결국 이는 본 조약의 삽입보다 후퇴한 것이며, 영국 측의 폐지 의사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⁰⁾ 그런데 해당 조항이 초안에서는 3관에서 존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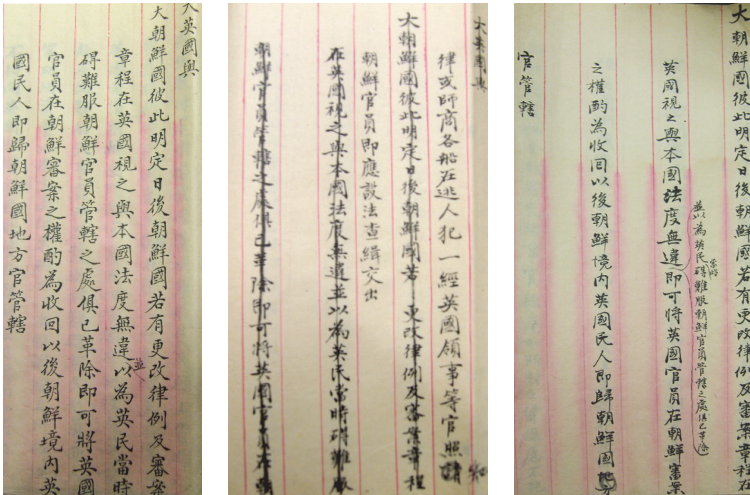
37) 통상이 허가된 개항장(부산, 인천, 원산)을 제외한 다른 항구에서의 무역행위는 다소 민감한 문제로 서, 조선 측에서는 이를 가급적 억제하고 싶어한 반면 서구나 일본 등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허가 받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내용의 수정을 생각해보면, 초안의 내용은 '중대한 사고'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개항장으로의 통상을 일체 허가해야 한다는 '허가'에 방점이 찍힌 내용이었던 반면, 최종안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약으로 내걸어 상대적으로 '제한'의 뉘앙스가 강해진 느낌이 있다. 따라서 조약문의 수정에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예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인다.

38)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79쪽.

39)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앞의 책, 368~369쪽.

40) 최덕수 외, 앞의 책, 쪽.

이 내용은 1883년 6월의 영문본 초안 역시 포함하고 있다.⁴¹⁾ 그런데 이 조항의 내용은 세 가지 초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재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나며, 여기서 초안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다시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이 눈에 띈다. 세 가지 초안에 담긴 영사재판권 조건부 폐지 조항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림 5>와 같다.



FO 1080/190/4

FO 1080/191/6

FO 1080/191/11

<그림 5> 삭제된 영사재판권 조건부 폐지 규정의 초안별 비교

FO 1080/190/4와 FO 1080/191/11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서된 상태로 기록되어, 조약의 본문에 정식 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에 비해 FO 1080/191/6의 경우는 내용을 잘 보면 이 영사재판권 조건부 폐지 조항이 엉뚱한 다른 내용 사이에 임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나마 줄이 그어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영문본 초안과 그에 기반하여 작성된 한문본 초안의 초기본에 계속하여 정식 조항으로 유지되다가, 파크스가 협상에 돌입하는 단계에서 (아마도 전략적 판단하에) 삭제되었으며, 조선 측의 요청

41) 최덕수 외, 앞의 책, 219~220쪽. ARTICLE III의 제10항이 이에 해당된다.

에 따라⁴²⁾ 급하게 재삽입되었다가 최종 단계에서 빠지고 주지하다시피 선후 속약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조선과의 협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FO 1080/191/6인 것으로, 이 초안의 작성 시기가 조선과 영국의 협상 시점인 1883년 11월 경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인들의 토지 임차에 대한 비용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에서 초안의 내용 중 최종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 있다.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서는 제4관 제3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기록된 초안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안: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해당 부지의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며, 영구 조차하려는 사람을 기다려 원래 지출한 地價 및 경영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조차 비용 내에서 먼저 제하고 해당 부지의 연간 세액은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함께 논의하여 정한 뒤 그 연간 세액을 조선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 43)

초안: ... **房屋이나 地段을 임차·매매하는 가격은 영국 영사관 및 조선 지방관이 계산하여 회동한 뒤 양측의 원하는 바대로 결정해서 상의하며, 官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 44)

초안에는 아예 임차시의 비용 자체를 영국 측과 조선 측이 협의하여 결정

42)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1883년 11월 20일을 전후로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규정의 삽입과 삭제에 두고 조선 측과 영국 측이 날카롭게 대립한 바 있으며, FO 405/34를 통해 그 전말을 알 수 있다.

43)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앞의 책, 327쪽, “... 四 以上地段 應由朝鮮政府 先向該地業主價買 加以經營費用選擇 俟永租有人 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 該地年稅 應由朝鮮及各國官員會同議定 其年稅 應納於朝鮮政府 ...”.

44) FO 1080/190/4 · 1080/191/11, “... 二 ... 其租賃房地之價 應由英國領事官及朝鮮地方官 酌量會同定奪如兩家情願 自行議商 勿庸官定者聽 ...”. 이 조항은 최종안과 내용이 많이 다르며, 따라서 비교적 최종안에 근접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FO 1080/191/6에는 보이지 않는다. 항목의 번호 또한 최종안과 달리 제5관 제2항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FO 1080/191/11을 보면 ‘勿庸官定者聽’이 원래 ‘亦准聽其自便(또한 그 편한 바대로 허락한다.)’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에 줄을 긋고 수정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초안 작성 도중에 다소 강경한 톤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삽입한 흔적을 알 수 있다.

하며, 조선 정부 측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으나, 임차에 따르는 세금도 아니고 임차 비용 자체를 양국 관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활발한 상행위를 위촉시킬 우려가 컸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고, 임차 비용이 아닌 세금 징수액에 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조선 정부 단독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외교 사절과 협의한다는 단서는 유지되었으나, ‘관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해당 구절이 지나치게 조선 측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4관 제6항은 여행 증명서인 護照와 관련된 영국인들의 內地 통행 규정으로서, 중간 정도까지는 대체로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일치하나, 후반부의 호조 미휴대 혹은 불법 행위시 처벌 규정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난다. 해당 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안: … 필요한 車夫와 船夫 등을 고용하여 붓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데 그 편의를 도모한다. 영국 인민이 호조 없이 상기 界限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호조 없이 계한을 넘은 영국인에 대해서는 곧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⁴⁵⁾

초안: … 필요한 차부와 선부 등을 고용하여 붓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함에 대해서 **지방관은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 만약 호조가 없거나 내지에서 불법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곳의 영사관으로 넘겨 처벌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는 단지 구금만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능멸하거나 학대를 가해서는 안된다. 이상 여행과 통상 시에 있어서의 호조**

45)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앞의 책, 328쪽, “… 六 …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 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英民逾越以上界限 並無執照 或在內地 有不法情事 應行挈交就近領事官懲辦 其逾界無照英民 卽可酌罰 並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

제출 요청과 관련된 각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 승선한 상태의 선원들이 이것을 인용하여 예로 삼거나 타결되어 약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선원들의 규칙은 영국 관원들이 별도로 정한 전용 장정에 따라야 한다.⁴⁶⁾

이 부분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국인의 조선 여행시 필요한 보조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초안에는 지방관의 간섭을 금지시킨다는 다소 강한 톤으로 되어 있던 것이 최종본에는 ‘편의를 도모한다’는 식으로 다소 느슨한 규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원안의 내용이 조선 측의 자주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호조 미휴대 혹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원안에는 영사관으로 넘겨 처벌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선 측에 의한 구금을 상정한 내용이 존재했던 반면, 최종본에는 이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이는 원안의 내용이 자칫 일시적이거나 영국인에 대한 조선 측의 구금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영국인의 조선 측 관헌에 의한 구금 자체를 차단하거나, 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또한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부분은 배에 승선한 상태에서 상륙하지 않은 선원들의 경우 호조 미휴대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기한 부분으로, 내용 전체가 삭제되었다.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려우나, 아마도 필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추측되며, 역시 조선 측의 자주권 침해에 대한 인식 또한 약간은 작용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⁴⁷⁾ 아울러 이 선원 제외 조항은 영문

46) FO 1080/190/4 · 1080/191/6 · 1080/191/11, “... 六 ...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 裝運行李貨物 地方官概不得從中攔阻 如無執照 或有不法情事 應即送交行就近領事官懲辦 沿途只可拘禁 不得藉端凌虐 以上請領護照遊歷通商各節 船上水手 不得援以為例其妥為約束 水手之則 應由英國官員另立專章 ...”, FO 1080/191/6에는 ‘船上水手’ 중 ‘船上水’까지만 표기되어 있고 이하의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이는 다른 두 대본을 보고 보충하였다. 그리고 문서 초안 원본에는 ‘援以為例’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맥상 ‘例’는 ‘例’의 오키로 판단된다.

47) 영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한 상태라면 당연히 상륙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구가 조선 측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처럼 비치기에 명분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듯하다.

본 초안에도 명기되어 있음이 발견된다.⁴⁸⁾

제6관은 개항장이 아닌 곳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좀 길지만 양자를 비교 서술하면 이하와 같다.

최종안: 영국 사람이 화물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몰래 운반하는 경우는 이미 운반했거나 못했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을 모두 관으로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은 관청에서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문다. 이상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관을 경유하여 재량으로 차압하며,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영국 인민은 일이 성공했거나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다 체포, 조사하여 즉시 부근의 영국 영사관에게 넘겨 심리하게 하고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리 결과를 기다려 다시 구별하여 처리한다.⁴⁹⁾

초안: 영국 사람이 화물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몰래 운반하는 경우는 이미 운반했거나 못했거나를 가리지 않고 **해당 상인의 죄를 심의하여 처벌함과 더불어 감금한다. 감금 기한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벌금은 1,000元을 넘을 수 없으며, 혹은 별도로 상당액의 벌금을 납부하여 구금을 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벌금 또한 1,000元을 넘을 수 없다. 금지를 위반한 선박과 화물은 모두 재량에 의해 관으로 몰수한다. 이상의 금지를 위반한 영국 상민에 대해 위반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신과 더불어 선박과 화물은 조선국 지방관이 스스로 범인을 조사·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즉시 부근의 영국 영사관에게 넘겨 심리하게 하고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리 결과를 기다려 다시 구별하여 처리한다.⁵⁰⁾

48) 최덕수 외, 앞의 책, 221쪽. 영문본 초안에서는 이 조항이 4항으로 되어 있다.

49)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앞의 책, 332쪽, “第六款 英國商民 如將貨物 偷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以上違禁貨物 可由朝鮮地方官 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英民 無論事成與否 並可查拿 隨即轉送就近英國領事官 由英國所派刑訟之員 審識 貨物扣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

50) FO 1080/190/4 · 1080/191/6 · 1080/191/11, “… 第六款 英國商民 如將貨物 偷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該商民 擬罪酌罰 並行監禁 惟禁期不得逾一年 罰款不得過千元 或可分**

최종안에는 비개항장 무역이 적발될 경우 주로 해당 화물의 몰수를 중심으로 처벌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데 비해, 원안은 그보다 훨씬 강경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금을 명시하였으며, 감금 기한과 벌금 액수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지방관의 권한도 ‘스스로 범인을 체포·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최종안에서는 감금 부분과 기한 및 벌금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조선 측의 권한도 ‘경유한다(由)’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초안과 비교해볼 때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제7관은 주로 선박의 조난에 대한 구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안에는 최종안에 완전히 삭제된 조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선 영토 내에서 각국의 사고 선박들을 구조하고 화물을 인양하는 등에 관한 일체 장정에 대하여 대조선국은 이미 大清國이 光緒 2년(1876) 5월 초4일에 황제의 뜻을 받들어 반포한 <保護船隻章程>을 준행하여 규례로 삼고 있다.⁵¹⁾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영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조선은 영국 측에 선박 사고시 구호 규정과 관련하여 청에서 1876년에 발표한 <보호선척장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해당 조문을 전달한 바 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초안에는 이 내용이 아예 조약에 들어가 있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된 것인데, 역시 그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려우나, 일찍이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대질서를 매개로 하는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한 부분이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⁵²⁾

別僅予罰款 而免監禁 此項罰款 亦不得逾千元 其違禁船貨 並可酌量入官 以上無論事成與否之英國商民並其船隻貨物 許朝鮮地方官自行查拿人犯 即送就近英國領事官處 由英國所派刑訟之員審讞 貨物扣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

51) FO 1080/191/6, “… 五 所有在朝鮮境內 救護各國失事船隻 及打撈貨物一切章程 大朝鮮國 現已議定 將大清國刊發光緒二年五月初四日奉旨保護船隻章程一律 通勅遵行為禮 …”. 이 항목은 제7관의 제5항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삭제되었으며, FO 1080/190/4와 FO 1080/191/11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영문판 초안에 없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제8관 제4항의 경우 영국 군함의 조선 해안에서의 측량에 대한 협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또한 초안의 내용이 훨씬 더 길다. 최종안과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안: 영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⁵²⁾

초안: **조선국 해안의 수면은 아직 답사가 두루 이루어지지 못하여 왕래하는 선박이 매번 압초에 부딪히거나 수심이 얇은 곳에 좌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 영국에서 전담하여 파견하는 선박과 선원들이 조선 연해의 각처를 명확하게 답사하고 정확하게 측량해서 해도를 그리고 압초의 위치에서부터 해수의 형세와 깊이 등의 각 항목을 주석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 양국 인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한다.**⁵⁴⁾

최종안에는 간략하게 측량시 협조 요청 정도로 해석되는 내용만 기재된 데 비해, 초안에서는 측량의 이유로서 조선 연해의 위험성과 더불어 영국 측이 주도하는 조사에 대한 권한을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내용은 조선이 1876년에 최초로 체결한 조약인 조·일수호조규의 제10관에 다음과 같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島嶼와 압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

52) 주지하다시피 조·미통상조약 체결 당시 미국은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조약 전문에 명시하지는 청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조약이 대등한 관계로 체결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청의 속국과 대등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에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록 직접적으로 ‘속국’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는 않았더라도 청의 규정을 조선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해묵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53)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앞의 책, 334쪽, “... 四 英國師船 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亦應竭力相助 ...”.

54) FO 1080/190/4 · 1080/191/6 · 1080/191/11, “... 第八款 朝鮮國沿海水面 尙未踏看周遍 以致往來船隻 每有觸礁擱淺等虞 現經議定 可由英國專派船隻人員 將朝鮮沿海各處 踏看明晰 測量的確 庶能繪圖立說註明島嶼礁石所在以及海水形勢深淺各節 便兩國人民 ...”.

고 圖志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⁵⁵⁾

구체적인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영문본 초안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전거에서 1858년 체결한 영·일통상조약의 11관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⁶⁾ 그러나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며,⁵⁷⁾ 마찬가지로 제1차 조·영조약에도 이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정확한 삭제 배경은 알기 어려우나, 아마도 조·일수호조규에 해당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무역에 중점을 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최혜국대우 조항이 있기에 초안과 같은 상세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조약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최혜국대우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최종본 기준으로 제10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초안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이 발견된다.

최종안: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을 거쳐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大朝鮮國 大君主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 사무들에 대하여 금후로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리들과 인민들이 입게 될 경우는 영국 및 영국의 관리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⁵⁸⁾

초안: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을 거쳐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 사무들에 대하여 금후로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리들과

55) 『高宗實錄』 권13, 13년 2월 3일, “… 第七款 朝鮮國沿海島嶼巖礁 從前無經審檢 極爲危險 準聽日本國航海者 隨時測量海岸 審其位置深淺 編製圖志 俾兩國船客 以得避危就安 …”.

56) 최덕수 외, 앞의 책, 227~228쪽.

57)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앞의 책, 294~305쪽

58)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앞의 책, 332쪽, “…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並他國臣民人等之處 英國及英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

인민들이 입게 될 경우는 영국 및 영국의 관리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 **大英國 대군주도 계속하여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리들과 인민들이 입게 될 경우는 조선 및 조선의 관리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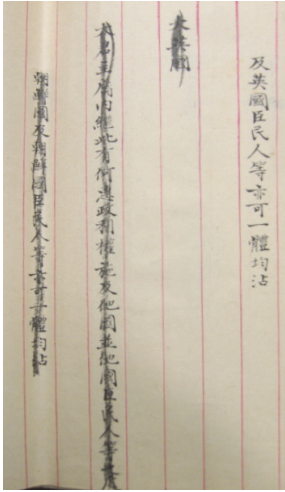
최혜국대우가 불평등조약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 내용에 있겠지만, 조약상의 명문에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될 경우 이 또한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즉 분명 상호 간의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는 주체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권리에 대한 피침략국인 조선의 의무만 나타나고 그 반대 방향의 내용이 표기되지 않는 것인데, 조·미조약⁶⁰⁾과 조·영조약의 내용이 모두 이렇게 편무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랍게도 제2차 조·영조약의 초안에 영국인에 대한 조선 국왕의 최혜국대우뿐만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영국 국왕의 최혜국대우 또한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초안 모두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문본 초안에까지 규정되어 있음이 보인다.⁶¹⁾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제2차 조·영조약의 결과 오히려 영국 측에 더 유리하고 조선 측에 더 불리하게 조약 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조·미조약에서조차 규정되지 않았던 최혜국대우의 쌍무조항을 파크스가 초안으로 마련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하 파크스의 언급에서 그 배경이 일정 부분 시사된다.

59) FO 1080/190/4 · 1080/191/6 · 1080/191/11, “…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並他國臣民人等之處 英國及英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大英國大君主 屬內繼此 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並他國臣民人等之處 英國及英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 세 자료가 구체적인 표현의 측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표기는 FO 1080/191/6을 기준으로 하였다.

60)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앞의 책, 305쪽.

61) 최덕수 외, 앞의 책, 229쪽. ARTICLE XII에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어, 제1항에는 조선 측의 의무, 제2항에는 영국 측의 의무가 규정되었다.



〈그림 6〉 한문본 조약 초안에서 삭제된 최혜국대우의 쌍무 조항 (FO 1080/191/6)

… 제12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입니다. 내 초안의 표현은 윌리스 제독의 조약에서 해당되는 조관과 비교하면 그 조관의 조건 부분에서 누락된 것을 소급시키고 상호주의적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는 아마 조선 정부가 집요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조선과 영국 간에 새로 체결되는 조약의 협상 담당자는 아마 이 문제에 관하여 각하의 특별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 62)

상기의 글은 파크스가 1883년 6월 22일에 영국 외상인 그랜빌(G.L.G. Granville)에게 제2차 조·영조약 초안을 보고하면서 각 조관의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한 문서인 FO 405/33, No.133 중의 일부 내용이다. 즉 이에 따르면 파크스는 조선 측에서 최혜국 조관의 일방주의적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으리라 예상하고 쌍무적 내용으로 초안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관세율 조정 등 파크스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준비했던 일종의 반대급부, 곧 조선 측에 줄 ‘당근’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최종 협상 단계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이 아닐까 싶다.⁶³⁾

62) FO 405/33, No.133, “… Article XII is the favoured-nation clause. The wording of my draft differs materially from that of the corresponding Article (XII) in Admiral Willes' Treaty in respect of the omission of the conditional portion of that Article, and in rendering it retrospective and also reciprocal, which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bably tenaciously claim. The negotiator of a new British Treaty with Korea would feel the need of receiving special instructions on this subject from your Lordship.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02쪽 수록)

63) 아울러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초안본의 작성 시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전술한 영사재판권 조건부 폐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FO 1080/190/4와 FO 1080/191/11이 비교적 정서된 상태로 기록된 데 비해 FO 1080/191/6은 문장 위에 줄이 그려진 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FO 1080/191/6이 협상 시점인 1883년 11월에 임박하여 작성된 초안임이 재차 확인된다.

4. 조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초안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조약 초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영국이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조선에 대해 설정했던 우선순위의 변화 추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주로 제2관에 규정된 내용이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정규 사절이나 특별 파견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장기 파견 형태가 고려되었다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애초에 외교 사절의 국왕 알현을 외교상 격식의 차원에서 조약에 삽입하려 했다가 역시 취소했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총영사 등 정규 직원이 반드시 정식 관원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또한 삭제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의미하는 방향성은 조선이라는 조약체결 국가에 대하여 영국 측이 설정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1882년 영국·독일과 더불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미국이 조약의 비준 이후 급속도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식었고, 그에 따라 파견 외교관 역시 대리공사로 급을 낮추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에 총영사를 파견하여 주청 공사관에 부속시킨 영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⁶⁴⁾ 기본적으로 파크스가 조선과의 제1차 조·영조약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시도한 목적은 일본의 조약개정 요구에 직면하여 동아시아 조약 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한 것이었지⁶⁵⁾ 조선에 대한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상기 조판에서의 ‘격식 하락’의 흔적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⁶⁶⁾

64) 종래에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영국이 청의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조·영 무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주공관 설치가 어려웠던 영국의 현실적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구대열, 『한국의 對西洋 개국 문제의 재검토: 韓美·韓英 修交조약 당시 극동의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3, 1983, 119~120쪽). 아울러 근래에는 총영사 파견을 격식의 ‘격하’로 보는 시각은 가쓰라-테프트 밀약의 발굴로 유명한 덴넷(Tyler Dennett)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접근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다른 사료적 근거 없이 영국의 총영사 파견을 강조한 데에서 기원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65) 한승훈, 앞의 논문, 1995, 85~92쪽.

66) 다만 대군주 관련 내용은 FO 1080/191/6에만 수록되어 있고, 이 초안이 협상에 입박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애초에 조선 측의 요청에 따라 삽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고 생각되나, 다른 사료에 의한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이상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렵다.

다음으로 영국 측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조선 측에는 불리한 내용으로의 개작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이 삭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될 것이다. 개항장이 아닌 항구에서 무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상인의 감금을 명시하고 지방관의 체포·조사 권한을 명시했다가 최종본에서는 슬그머니 감금 내용이 누락되고 해당 화물의 몰수를 중심으로 내용이 변경되며, 지방관의 권한도 애매한 표현으로 변경된 것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쌍무적으로 규정된 최혜국대우 조항이 편무적으로 바뀐 것도 여기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 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 비단 이와 같은 방향의 개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정반대로 상대적으로 조선에 불리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한 여럿 존재했다. 조계 밖 토지 임차에 대한 세금 액수를 규정하려 했던 초안이 조선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임차 매매 가격을 관원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세금 징수액과 관련하여 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빠졌다. 영국인의 여행시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해 지방관의 간섭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편의를 도모한다는 식으로 느슨하게 변경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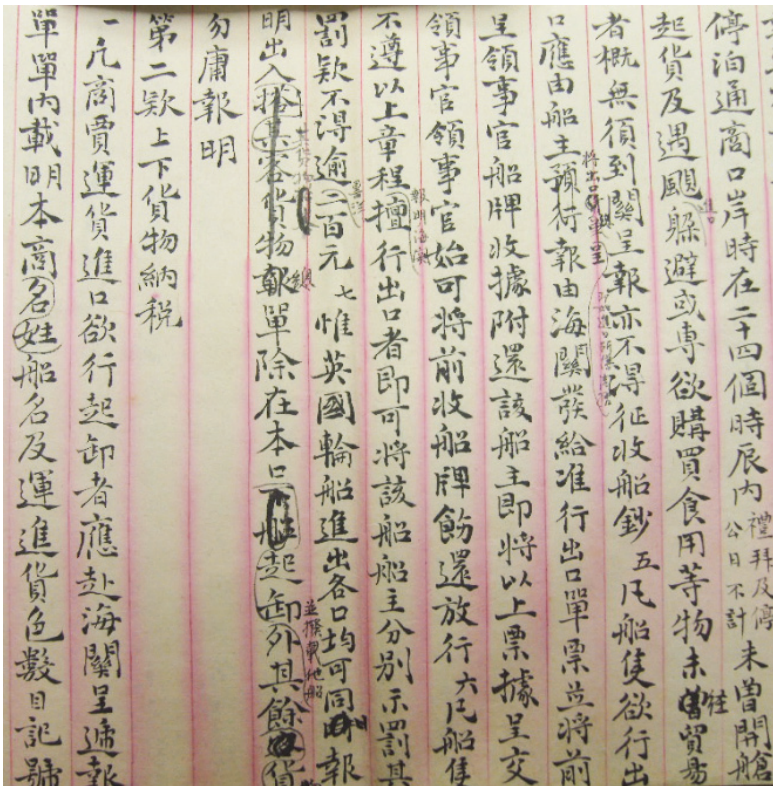
당연히 파크스가 조선의 이익을 생각해준 결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영조약은 동아시아에서 당시 적용 중이었던 조약들의 내용이 집약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약문의 작성 과정에서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조약은 물론 1882년 제1차 조·영조약, 그리고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 등이 모두 참고가 되어 반영되었다. 이러한 여타 조약들의 집약은 크게 보아 ‘동아시아 조약 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파크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약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⁶⁷⁾

한편 제한적이지만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도 있었다. 비개항장에서의 통상 규정에 대하여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67) 이는 조·영조약의 비준안으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동아시아 조약체계의 개정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는 것이었다(한승훈, 앞의 논문, 2006, 235쪽).

반영된 흔적이라던가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관련 내용의 삭제와 재삼입 흔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조·영조약의 한문본 초안은 영국 측 생산 및 소장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측의 도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음 또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당시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조약체결을 준비하였는지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얼핏 보면 조선 측의 자료가 이년가 착각할 정도로 입력 및 수정 양식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한문 양식에 충실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테면 한자의 입력 순서를 바꾸는 수정 양식인 S 표기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림 7〉 영국 측 작성 조약 한문본 초안 중 수정 표기의 예(FO 1080/190/2)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뒤 1883년 10월에 파크스는 서울에 왔고, 통리교섭통상사무이문 독관 민영목이 협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당시 조선 측과 교섭한 자료들은 앞서 소개한 FO 문서 중 서신 파트와 더불어 대부분 『영안』에 기재되어 있는데,⁶⁸⁾ 주로 영사재판권에 대한 조건부 폐지 조항 및 관세율 등 큰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분명 제2차 조·영조약 협상은 양측 모두에 있어서 쉽지 않은 협상이었으며, 세계 최강국인 영국과 상대하는 조선 측 역시 녹록지는 않았다.⁶⁹⁾ 조선 측 협상 대표였던 민영목이 15개 부분에 대해 개정을 이끌어냈으며,⁷⁰⁾ 200여 개의 무역 대상 물품에 대한 세칙 변경은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다만 현전하는 자료만으로 볼 때 조선 측에서 마치 파크스가 하나하나 자구를 수정한 것처럼 영국 측 초안을 가지고 일일이 검토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에는 조약문 전체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의견을 냈고, 그 결과 조항 하나를 통째로 없애기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⁷¹⁾ 물론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조선 측에서 『倭使日記』나 『심행일기』와 같은 일기체 기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조약 초안 중에서 최종본에 해당되는 내용과 실제 체결된 조약의 내용과 비교하면 영사재판권 조건부 폐지 조항이 선후속조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상이 타결된 결과 1883년 11월 26일에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듬해인 1884년 4월 28일에 비준이 이루어져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정식 발표되기에 이른다.

68)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앞의 책, 7~13쪽, #14~26 참조.

69) FO 405/34에는 파크스 등이 작성한 조약 체결 관련 내용들이 현안 및 시간별로 보고서 형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며, 특히 『영안』에 나와 있지 않은 조약 협상 관련 내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차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또한 활용하고자 한다.

70) 『尹致昊日記』 1883년 11월 7일.

71) 『倭使日記』 丙子 1월 26일 啓下 참조. 이후 체결된 수호조규 부록 및 통상장정 체결과 관련해서도 당시 조선측 대표 趙寅熙가 일본측 대표 미야모토(宮本小一)와 협상하면서 하나하나 조문을 고치고 삭제하는 장면이 『왜사일기』에서 발견된다(『倭使日記』 丙子 6월 27일 講修官問答 등 참조).

5. 맺음말

이상에서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조·영수호통상조약 관련 한문 자료 중에서 조약의 한문본 초안을 최종본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한문본 문서 중 제2차 조·영조약 관련 자료는 주로 외교 사절 간에 교환한 서신과 조약 및 부속 협약에 대한 한문본 초안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초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조선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 삭제, 비개항장 항구 무역 적발시 상인의 감금 규정 누락, 그리고 최혜국대우 조관 중 쌍무적 내용의 편무적으로의 수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조선에 불리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조계 밖 토지 임차시 세금 액수 규정 내용의 조선 규정 준용으로의 변경, 토지 임차시 매매 가격의 관원 결정 내용과 더불어 세금 징수액 관련 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그리고 영국인의 여행시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지방관 간섭 금지 내용의 '편의 도모'로의 변경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격식이 격하된 흔적을 통해 영국 측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 설정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하락 또한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제한적이지만 비개항장에서의 통상 규정 등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도 있었다.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어디까지나 조약체결의 주체인 쌍방 중에서 한쪽에 불과한 영국 측의 인식만을 보여준다는 한계가 명백하다. 아울러 그 내용 역시 관세를 같은 큰 문제가 아닌 관제로 많은 부분에서 여타 보충 자료 없이 조약의 수정문만 갖고 그 배경을 유추하느라 추정적인 표현이 다수 들어갔다는 사실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새로운 미간 자료가 발굴되어 이 시기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사실이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사료

- 『高宗實錄』 『尹致昊日記』 『倭使日記』(奎貴16034)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13(英案 1), 1967.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舊韓末條約彙纂』 中, 東亞出版社 工務部, 1964.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近代韓國外交文書 5: 조영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2012.

FO 1080/190 – Treaty with Korea, tariff and trade regulations : correspondence and drafts

FO 1080/191 – Treaty with Korea : correspondence and drafts

(The National Archives -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

2. 저서

-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김종학,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2010.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3. 논문

- 구대열, 『한국의 對西洋 개국 문제의 재검토: 韓美·韓英 修交조약 당시 극동의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3, 1983.
김승우, 『19세기말 서구인 윌리엄 G. 애스턴의 한국문학 인식』, 『동양고전연구』 61, 2015.
김현수, 『영국 직업 외교관, 씨 해리 파크스(Sir Harry Parkes)의 동아시아 외교 활동, 1842-1885』, 『영국연구』 9, 2003.
_____, 『파크스(Sir Harry Parkes) 관련 사료들을 통해 본 한영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 『영국연구』 11, 2004.
석주연, 『구한말 영국인 외교관 애스턴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 - 한국어 관련 논문과 한국어 학습 일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9, 2017.
오정우, 『韓末 朝鮮의 對英修交 考察』, 『전북사학』 40, 2012.
우철구, 『19C 후반 영국의 對韓政策: 1883년 한영 조약체결을 전후하여』, 『國史館論叢』 44, 1993.
유바다, 『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宗主·屬國 조선의 지위』, 『國際法學會論叢』 62(2), 2017.
한승훈, 『朝英條約(1883. 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韓國史研究』 135, 2006.
_____,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한국근현대사 연구』 52, 2010.
_____,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1874~1895)』,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An Analysis on the Draft in Chinese of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 Focused on the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TNA) –

Min Hoi Soo*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among those written in Chinese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FO 1080/190~191), mainly consist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diplomatic envoys and drafts of the main treaty and attached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s, there are some parts fixed in favor of Britain, disadvantageous to Korea. Those containing the elimination of the conditional abolition clause on the extraterritoriality, the omission of the clause on imprisoning the merchants in case of being caught for trading at non-treaty ports and the revision of the favored-nation clause into the reciprocal one from that of being unilateral correspond to this ca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such cases in which the clauses originally disadvantageous to Korea were deleted or changed, as the change of the regulation for the tax in case of renting lands outside the concession, the elimination of the sentence containing disobeying th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n the amount of the tax in case of renting lands and the change of the clause containing prohibition of the local governor's interference on British employing necessary manpower for traveling into that of accommodating

* Hongik Univ. / Assistant Prof.

the travelers. These changes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intention of the British negotiation representative H.S.Parkes to save the East Asian treaty system integrated at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Meanwhile, the reduce of importance for Korea by Britain can be inferred from the downgrade of formality in diplomacy with Korea by Britain, and the clauses in which Korean opinion seems to have been accepted also can be found from the drafts.

Key words : the National Archives(TNA), Britain, H.S.Parkes(巴夏禮),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Chinese, draft, favored-nation, extraterritoriality